

장학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선발기준과 장학금지급은 본 대학교 제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업무의 주관) 본 대학교의 장학업무 중 예산안의 수립 및 장학생의 선정은 학생복지처장이 관장하고, 장학기금의 관리·운영 및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결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한다.

제 2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4조(교내장학금)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입생장학금

가. 가천 장학금 : 전체수석 입학자

나.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수능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다만, 예체능계열 및 한의과대학은 제외

다. 법과대학 입학성적우수장학금 : 법학과 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수능반영영역 비율 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라. 바이오나노대학 장학금

(1) 바이오나노·생명과학(정시,수시)장학금 : 바이오나노, 생명과학과 (정시,수시)입학자중 수능 평균성적(수능 반영영역 비율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2) 바이오나노학과 최초합격자 : 바이오나노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마. IT대학 장학금 :

(1) 소프트웨어 설계·경영학과 입학성적우수(정시,수시) 장학금 : 소프트

3-5-2~2 제3편 행 정

- 웨어설계·경영학과(정시,수시) 입학자중 수능 평균성적(수능반영 영역 비율 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 (2)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 최초합격자 : 소프트웨어설계·경영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 바. 한의과대 특별장학금 (개정 2013.12.26.)
- (1) 한의과대학입학자중 최초합격 순위가 2위 이내인 자
- (2) 위 (1)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한의과대학입학자 중 최초합격 순위가 4위 이내인 자
- 사. 가천고시장학금 : 수학능력시험성적 반영영역 평균이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중 고시반에서 고시 준비를 하는 자
- 아. 수시 어학 특기자 장학금 : 수시 어학 특기자전형입학자 중 언어 영역 별 장학생으로 선발인원에 선정된 자
- 자. 글로벌경영학트랙 장학금 (신설 2013.02.27)
- (1) 글로벌경영학트랙 입학성적우수(정시, 수시) 장학금 : 글로벌경영학트랙(정시, 수시)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수능반영영역 비율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자
- (2) 글로벌경영학트랙 최초합격자 : 글로벌경영학트랙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 차. 경찰·안보학과 장학금 (신설 2013.02.27)
- (1) 경찰·안보학과 입학성적우수(정시, 수시) 장학금 : 경찰·안보학과(정시, 수시) 입학자중 수능평균성적(수능반영영역 비율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 (2) 경찰·안보학과 최초합격자 : 경찰·안보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 카. 금융수학과 장학금(신설 2015.02.13.)
- (1) 금융수학과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 금융수학과(정시, 수시) 입학자 중 수능평균성적(수능반영영역비율적용)이 별도로 정한 성적기준 이내인 자
- (2) 금융수학과 최초합격자 : 금융수학과 정시 최초합격자 중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 이내인 자
- 타. 의과대학 장학금 : 의과대학(수시, 정시) 입학자(개정 2015.08.11.)
- 파. 학술교류 장학금 : 본교와 학술교류 협정을 맺은 학교를 졸업한 자

- 하.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장학금 : 학·석사통합과정 입학자(신설 2015.12.29.)
2. 성적우수장학금 : 해당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서 품행이 방정한 자
 3. 저소득층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가. 인간사랑 :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나. 이웃사랑 :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다. 공동체사랑 : 차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라. 지역사랑 : 기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4. 보훈장학금 : 보훈대상자 및 보훈자녀, 다만, 보훈자녀는 입학 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실점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5. 재직자녀장학금 : 학교법인가천학원 산하 설치기관(학교및부속병원)에 재직중인 교직원(삭제) 자녀 또는 의료법인길의료재단 산하 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직원 자녀. 단,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2.29.)
 6. 공로장학금 : 학술·체육·사회봉사·문화예술·학생활동 등으로 본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자
 7. 간부장학금 : 학생회의 활동을 한 간부학생 중 교내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8. 근로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으로서 교내외에 근로를 제공한 자
 9. 군장학금 : 군위탁으로 입학한 자로서 입학후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이어야 한다.
 10. 특기자장학금 : 특기자로서 장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
 - 10의2. 음악콩쿨 및 미술대전 입상자 장학금 : 본교 주최 콩쿨 및 미술대전에서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 단, 입학후에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음악콩쿨은 3.0, 미술대전은 3.5이상이어야 한다.
 - 10의3. 가천창작문학백일장 장학금 : 본교 주최 가천창작문학백일장에서 동상(銅賞) 이상 입상하고 본교에 입학한 자. 단,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이상이어야 한다.
 - 10의4. 어학특기 및 과학·수학·전산정보특기 장학금 :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특기자 기준에 적합한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2년간 등록금을 면제

3-5-2~4 제3편 행 정

할 수 있다. 단,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이어야 한다.

11. 외국인장학금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본 대학교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2. 고시장학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장학금 및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해당 하는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종류와 장학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에 따로 정한다.

가.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나. 위 가항에 준하는 자격시험 1차 합격자

다.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라. 6급 이하 국가고시 및 이에 준하는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마. 우수편입생 : 국가고시 1차 합격(2차 시험 응시자격이 있는)자가 법학과에 편입학할 경우

바. 고시장려금 : 국가고시 1차 합격 후 2차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자

13. 학술지원장학금 : 교원의 연구활동 및 면학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학술지원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9.25)

14. 전문계고특별 장학금 :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중 특별전형 입학자에 한하여 산업체 근무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으로서 입학후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5이상인 자

15. 어학우수 장학금 : 글로벌리더 인재를 육성하고자 어학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 가천나눔장학금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7. 창업장학금 : 창업지원단의 창업(교육)활동을 통해 축적한 창업마일리지에 따라 창업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8.29.)

18. 기타 장학금 : 위 각호에 장학금외에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칙’으로 따로 정하되, 특별 장학금을 신설할 경우에는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장학금지급의 제한) 각종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급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08.11.)

1. 해당학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휴학한 경우와 복교 또는 재입학한 자로서 사유발생후 한 학기를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보훈자녀장학생 제외)
3.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미만인 경우
4. 해당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다만, 총장이 인정하여 학점등록을 허가한 장애학생 및 4학년 1학기<5년제의 경우 5학년1학기, 한의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경우 본과 4학년1학기>는 9학점 이상 가능, 근로·특기자·외국인·보훈·고시장학생은 제외) (개정 2012.09.25., 2014.03.31)
5. 해당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5 미만인 자(근로·특기자·외국인·보훈·고시장학생은 제외) (개정 2014.03.31.)
6. 입학전형에서 성적이 우수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입학한 학과로부터 전과한 학생(수능성적우수 장학생 제외) (신설 2014.03.31.)

제6조(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받은 후 자퇴 또는 타교로 전학한 자는 해당학기에 지급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신입우수 장려금(월생활보조비)은 기지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 범위) ①장학금(교외 장학금 포함)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

1. 어학우수 장학금
2. 해외교류 장학금
3. 해외연수 장학금
4.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②근로성격과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개정 2012.09.25., 2013.12.26)

③이중지급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교외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순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09.25.)

④ 동종 또는 유사한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12.26.)

제8조(수혜기간) 장학금 수혜기간은 특별히 기간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기간으로 한다.

제9조(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은 출연자 및 각 장학재단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

라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

제10조(장학금지급의 신청) ①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각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수혜대상자를 선정, 소속대학장에게 추천한다.

②대학장은 당해 대학의 장학생 대상자를 총괄하여 신청서와 관계증명서류를 지정된 기간안에 학생복지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의 확정) 학생복지처장은 신청 장학생 대상자를 종합하여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12조(절차 및 상실) ①장학금신청대상자는 지정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장학금 수혜확정자가 지정기간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 4 장 장학위원회

제13조(구성) ①본 대학교에 장학금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은 각 학장, 각 실·처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교수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금의 예산책정 및 운영정책에 관한 심의
2.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지급기준액의 심의
3. 장학금지급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4. 기타 장학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가 관리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학·복지팀에서 담당한다.

제19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0조(장학사정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11.30)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의 적용은 2013-1학기 장학금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3-5-2~8 제3편 행 정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